정정보도문의 청구에 있어서 시사성의 한계

Munchen 고등법원 1988. 6. 30. 판결

-21 V 2533/88 사건 -

적용법조

Bayern 주 언론법 제 10 조

판결요지

1. Bayern 주의 언론법이 적용되는 범위내에 있어서, 정정보도의 청구시사성이 인정되는 범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면, 정정보도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가처분의 명령을 구하는 신청에는, 그 정당한 이익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.

2. 정정보도문이 법원에 제출된 이후에 정정보도의 신청을 정정하는 것은, 피해자가 처음에 제출된 정정보도문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허용될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.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정정은 그 결함이 사소한 것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지, 결함이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.

사실개요

이 사건 당사자들은,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4 개의 서로 상이한 광고지에 그의 정정보도문의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서로 다투고 있다. 위 기사들은 1987. 11 5 자 Passauer Woche, 1987. 11. 11 자 Donau-Isar Woche, 1987. 11. 17 자 Blickpunkt C 판(Rottal-In 구역판) 그리고 1987 11. 26 자 Blickpunkt D 판(Traunstein 구역판)에 각 게재되었었다. 원고의 첫번째 정정보도문 게재청구는 1987 12. 1 자에 행해졌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1987. 12. 11 자 서면에 의하여 회답을 보냈었다. 그후 바로 가처분신청인은 1987 12. 15 자의 편지로써 그의 변경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하였었다. 위 1987 12. 1 자 및 12. 15 자의 정정보도문은 둘다 모두 4 개의 광고지에 대한정정보도게재의 청구를 요약해서 기재하고 있었다.

1987. 12. 29(접수는 1988. 1. 4 일)에 가처분신청인은 가처분의 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 바,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 4 개의 광고지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기재하고 있었다. 가처분 신청인의 1 심의 소송대리인은 1988. 1. 14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.

즉, 「예를 들어 Passauer Woche 에 게재된 정정보도문의 문안에는 당연히, 이와 마찬가지의 정정보도문이 위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다른 신문들에도 역시 게재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. 위 1987. 12. 15 자로 요구된 정정보도문은, 위 주식회사가 발행하고, 그러고 위 기사가 보도된 바 있는 모든 신문에 마찬가지로 게재되어야 하는 것이다. 」1988. 2. 4 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1988. 2, 9 가처분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. 항소장에는 (여기에는 항소이유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.)

신청이 4 개의 광고잡지에 4 개의 서로 다른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것으로 세분되어 있었다. 이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는 1988. 3, 10. 가처분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.

1988. 6. 10 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가처분 신청인은 몇 가지의 점을 삭제함으로써 그의 가처분신청의 범위를 축소하였다.

판결이유

가처분 신청인의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기는 하지만, 그러나 그 실제내용에 있어서는 이유가 없다. 이 사건 신청에는 정당한 이익이 결여되어 있다. 왜냐하면 위 신청은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서, 시사성의 한계일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.

1. Bayern 주 언론법 제 10 조는, 정정보도의 청구에 대하여 하등의 명문에 의한 시간적인 한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. 위 규정은 나아가 정정보도의 청구가 지체 없이 행해질 것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. 그러나 Bayern 주 언론법 제 10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, 정정보도문의 게재 또는 배포의 청구는, 단지 그 시사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.

(Seitz/ Schmidt/ Schoener,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in Presse, Film, Funk undFernsehen, 1980. Rd.-Nr.99=S. 38f unter Hinweis auf Bay. Oblg, NJW 1970. 1927., Senat, Urteil vom 8. Marz 1985. 21U 1854/85 : 위 범위에서는 모두 정당한 이익의 문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)

위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, 문제된 사건이 아직 시사성이 있어서, 그 사건이 독자들의 인식으로부터 아직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(Senat, 1976. 6. 8 자 결정. 21W 1498/76 사건). 가처분 신청인이 1988.6. 10 에 한 최초의 정정보도의 청구는 이 시사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었다. 즉 문제된 위 광고잡지에 이 사건기사가 보도된 이후에 이미 6 개월 이상이나 경과되어 있었던 것이다. 광고잡지란 원래, 예를 들면 방송프로그램 안내 잡지보다도 더 그 시사성이 길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(이 곁에 관하여는 당원, 1979. 10.1 자 판결, 21U 2912/79 사건).

2. 그런데 이와 같은 기간(이는 역시 Bayern 주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.)은, 형식적 및 내용적으로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적법한 정정보도문이, 그 전문과 함께 정정보도 게재의무자에게, 위 시사성이 인정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된 경우에만, 준수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. 즉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, 정정보도문은 바로 게재될 수 있도록 하여(abdruckreif)시사성의 범위내에서 제출되어 야만 하는 것이다. (Seitz/Schmidt/ Schooner, a.a.0. Rd.-Nr. 96=S. 38. m.w. N) 사소한 결함들, 즉 예를 들면 제소 받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 938 조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정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결함은 이 경우에 별문제로 되지 아니한다. 그리고위 Bayern 주 언론법 제 10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, 처음에 잘못 작성된 정정보도문은 다음과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를 정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. 즉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이, 특별한 지체 없이 바로 행해질 수 있고, 그리고 정정보도문의 최초의 작성이 작성자의 잘못 없이 잘못 기재 된 경우이다(Seitz/Schmidt/ Schooner, a.a.0. Rd,-Nr. 95=S.37)

그리고, 피해자가 최초에 송부된 정정보도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,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, 시기에 늦게 정정보도문을 정정하거나 재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(Wenzel, Das Recht der Wort-und Bildberichterstattung, 1. Aufl. 1967. S. 262).

만일 위와 다르게 해석한다면, 이는 정당한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를 불필요하고 부당하고 곤란하게 하는 것이고, 따라서 피해자 개인의 인격권의 보호에 적절치 못하게 될 것이다(독일기본법 제 2 조 제 1 항).

이와 같은 내용들이,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인과 같이 등록된 단체(사단)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, 해결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다.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, 최초의 정정보도문은 명백하게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. 즉 가처분 신청인은 1987. 12. 1 자 및 12. 15 자의 정정보도문이 Bayern 주 언론법 제 10 조에서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주장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이다.

왜냐하면, 첫째로, 게재되어야 할 정정보도문의 제목에 4 개의 광고잡지의 모두가 기재되어 있었어야 했었던 것이다.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. 이와 같은 하자는 1988. 1. 14 자 가처분 신청인의 준비서면에서 정정되어졌다. 그러나 위 준비서면에서는 정정보도문의 2 가지 점들이, 4 재의 광고잡지전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, 진술들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. 이 점은 원래 요청된 정정보도문의 제 2 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다. : 즉 이 주장은 Blickpunkt 위 1987. 11, 20 자 D 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다. 나아가 이 점은 원래 요청된 정정보도문의 제 8 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. 즉 이 주장은 Blickpunkt 위 1987. 11. 17 자 C 판 및 Donau-Isar Woche 의 1987. 11. 11 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다. 이와 같은 하자들은 가처분 신청인의 1988. 3. 7 자 항소장겸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제거되어졌다. 그러나 이 시점에 있어서는 1987 년 11 월에 보도된 위 내용들은 이미 시사성이 없게 된 것이었다. 즉, 위 광고잡지의 독자들의 의식으로부터 이미 사라지고 난 뒤인 것이었다.

그러나 원래 그 하자가 아주 중대한 정정보도문의 하자를 정정하는 것은 시사성이 인정되는 기간 내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